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2025378 판결 [계약보증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진우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58360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7.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식회사 A(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의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영입된 Q가 경영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수입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부품양도계약 체결

○ 피고는 2018. 10. 15. D과 사이에서 피고가 남양주 및 여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수입자동차 재생부품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D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D의 신주를 피고에게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

다. D과 원고 사이의 부품매매계약 체결

○ D은 위 계약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2. 1.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품을 원고에게 50억 원(부가가치세액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55억 원을 D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지 등

- 원고는 2019. 2. 20. 피고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9. 9. 26.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3자가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 원고는 2020. 3. 23.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사업 플랫폼 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2019. 2. 20.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3. 15.까지 원고에게 1차 플랫폼 개발 시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시안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20. 3. 27.까지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갑 1 ~ 3, 5 ~ 8, 20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9. 2.경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 사업 플랫폼 개발 용역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을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업무 착오로 2019. 2. 20.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피고는 그 계약에 따라 3개월의 개발 및 제작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2019. 3. 15.까지 1차 플랫폼 개발 시안을, 2019. 3. 29.까지 2차 플랫폼 개발 문건을 원고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업무 착오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10 ~ 18, 22호증, 을 2, 4 ~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품의 전전 양수인인 원고는 최초 양수인인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이 사건 금원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회사였는데,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R은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드라마제작 등 사업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규 사업을 모색하던 중 D의 대표이사 Q의 권유에 따라 D과 함께 수입자동차 재생부품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사 내에 신규 사업본부를 설치한 원고는 D의 대표이사 Q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였고, 2019. 1. 31.경 6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액 납입되자 2019. 2. 1.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D에게 5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어서 수입자동차 재생부품 등 재고자산 50억 원을 원고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 원고의 제43기(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율회계법인은 위 50억 원의 재고자산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위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원고에게 요청하였는데, 그 전인 2018. 10. 15.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D은 2019. 2. 1. 원고로부터 위 55억 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계약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원고와 D이 피고에게 재고자산 실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피고는 계약금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2019. 2. 20. 이 사건 금원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후 피고가 재고실사에 협조하여 위 외부회계감사법인은 2019. 3. 21. 감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D은 2019. 3. 25. 위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그 무렵 원고와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남양주 창고의 부품을 여주 창고로 옮겨서 보관관리하였고, 원고는 2019. 3. 5.부터 6. 10.까지 임치료와 위탁관리용역비 등으로 합계 6,644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나 D이 이 사건 부품을 인수해가지 않고 임치료와 위탁관리용역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그러던 중 원고와 D 및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지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을 2019. 9. 30.자로 해지하고, ② D은 H그룹 매입분에 대한 잔존물 수거비용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액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③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④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위 2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2019. 10. 5.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위 2억 6,400만 원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그에 기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강제 집행하여 2020. 4. 24.까지 위 2억 6,4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원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여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4.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김선아, 판사 천지성